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24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41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재무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4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고,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대부료 감경 조항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 사유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항목 삭제 (안 제4조의 3)
-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16조)
- 대부료 감경 조항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반영 (안 제30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 - 2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- 2) 입법예고(2024. 3. 8. ~ 2024. 3. 28.) 결과 의견 반영

구분	입법예고 조례안	의견 반영 조례안
제4조의3제2항	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	삭제
제30조제4항제8호	~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~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별표 1 제목	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	<u>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(제45조 관련)</u>
별표 1 제1호 가목 구분	실·과장실	실장 담당관 과장
	담당 또는 계장	담당 또는 팀장
별표 1 제2호 위원실, 회의실 비교	위원회 수 : 3개	위원회 수 : 4개
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본 안건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.
- 2023. 7. 25. 제정되고 2024. 7. 26. 시행예정인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4항¹⁾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. 다만, 대부료 등의 감면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1)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2조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의5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영 제17조”를 “법 제21조”로 하고,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30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 계획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별표 1의 제목 “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”을 “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(제45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제1호가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기관장실	부기관장실	국장·단장·소장실	실장·담당관·과장	담당 또는 팀장	직원
----	------	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

별표 1 중 제2호의 의원실란 및 회의실란의 비고 “위원회 수: 3개”를 각각 “위원회 수: 4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1 중 제2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·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3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u>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「<u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p>	<p>제4조의3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4조의5(위원의 해촉) ① (생 략)</p> 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5(위원의 해촉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----- ----- 법 제21조-----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
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~ ③ (생 략)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④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⑤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</p> <p>1. 구청사</p> <p>가.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(단위 : m²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관장실</th> <th>부기관장실</th> <th>실·국장실</th> <th>실·과장실</th> <th>담당 또는 계장</th> <th>직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구청</td> <td>99</td> <td>56.16</td> <td>38.88</td> <td>17.92</td> <td>7.65</td> <td>7.2</td> </tr> <tr> <td>동청사</td> <td>3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7.65</td> <td>7.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기관장실	부기관장실	실·국장실	실·과장실	담당 또는 계장	직원	구청	99	56.16	38.88	17.92	7.65	7.2	동청사	33		-	-	7.65	7.2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(제45조 관련)</p> <p>1. 구청사</p> <p>가.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(단위 : m²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관장실</th> <th>부기관장실</th> <th>국장·담당장·소장실</th> <th>실장·담당·당관·과장</th> <th>담당 또는 팀장</th> <th>직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구청</td> <td>99</td> <td>56.16</td> <td>38.88</td> <td>17.92</td> <td>7.65</td> <td>7.2</td> </tr> <tr> <td>동청사</td> <td>3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7.65</td> <td>7.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기관장실	부기관장실	국장·담당장·소장실	실장·담당·당관·과장	담당 또는 팀장	직원	구청	99	56.16	38.88	17.92	7.65	7.2	동청사	33		-	-	7.65	7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관장실	부기관장실	실·국장실	실·과장실	담당 또는 계장	직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	99	56.16	38.88	17.92	7.65	7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청사	33		-	-	7.65	7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관장실	부기관장실	국장·담당장·소장실	실장·담당·당관·과장	담당 또는 팀장	직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	99	56.16	38.88	17.92	7.65	7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청사	33		-	-	7.65	7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2. 구의회 청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실명</th> <th>면적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의원실</td> <td>의장실</td> <td>99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의장실</td> <td>56.16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위원장실</td> <td>38.88m²</td> <td>위원회 수: 3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회의실</td> <td>본회의장</td> <td>의원 수 × 5 + 방청객 수 * × 1.5m²이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회의실</td> <td>의원 수 × 3.3m²</td> <td>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</td> </tr> <tr> <td>위원회실</td> <td>의원 수 × 8.2m²</td> <td>위원회 수: 3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10">부속공간</td> <td>사무국장실</td> <td>38.88 ~ 64.0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사무실</td> <td>직원 수 × 7.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자료실 및 도서실</td> <td>198 ~ 297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대의원</td> <td>대의원</td> <td>의원 수 × 2.5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자</td> <td>50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실</td> <td>운전자</td> <td>운전기사 수 × 1.8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회의원</td> <td>의원 수 × 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계직원</td> <td>계직원</td> <td>직원 수 × 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방청객</td> <td>방청객 수 * × 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d</td> <td>당직실</td> <td>2인실 기준 15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화장실</td> <td>44~46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타</td> <td>예비실(50m²)을 1개소 이상 확보</td> <td>창고 / 예비실 등</td> </tr> <tr> <td>연계공간</td> <td>로비·복도·계단</td> <td>(a + b + c) × 30~4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방청객 수 = 인구 수 × 0.000015 + 50</p> <p>(이하 생략)</p>		구분	실명	면적기준	비고	의원실	의장실	99m ²		부의장실	56.16m ²		위원장실	38.88m ²	위원회 수: 3개	회의실	본회의장	의원 수 × 5 + 방청객 수 * × 1.5m ² 이상		회의실	의원 수 × 3.3m ²	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	위원회실	의원 수 × 8.2m ²	위원회 수: 3개	부속공간	사무국장실	38.88 ~ 64.0m ²		사무실	직원 수 × 7.2m ²		자료실 및 도서실	198 ~ 297m ²		대의원	대의원	의원 수 × 2.5m ²		기자	50m ²		실	운전자	운전기사 수 × 1.8m ²		회의원	의원 수 × 2m ²		계직원	계직원	직원 수 × 2m ²		방청객	방청객 수 * × 2m ²		d	당직실	2인실 기준 15m ²		화장실	44~46m ²		기타	예비실(50m ²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	연계공간	로비·복도·계단	(a + b + c) × 30~40%		<p>2. 구의회 청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실명</th> <th>면적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의원실</td> <td>의장실</td> <td>99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의장실</td> <td>56.16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위원장실</td> <td>38.88m²</td> <td>위원회 수: 4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회의실</td> <td>본회의장</td> <td>의원 수 × 5 + 방청객 수 * × 1.5m²이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회의실</td> <td>의원 수 × 3.3m²</td> <td>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</td> </tr> <tr> <td>위원회실</td> <td>의원 수 × 8.2m²</td> <td>위원회 수: 4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10">부속공간</td> <td>사무국장실</td> <td>38.88 ~ 64.0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사무실</td> <td>직원 수 × 7.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자료실 및 도서실</td> <td>198 ~ 297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대의원</td> <td>대의원</td> <td>의원 수 × 2.5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자</td> <td>50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실</td> <td>운전자</td> <td>운전기사 수 × 1.8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회의원</td> <td>의원 수 × 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계직원</td> <td>계직원</td> <td>직원 수 × 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방청객</td> <td>방청객 수 * × 2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d</td> <td>당직실</td> <td>2인실 기준 15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화장실</td> <td>44~46m²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타</td> <td>예비실(50m²)을 1개소 이상 확보</td> <td>창고 / 예비실 등</td> </tr> <tr> <td>연계공간</td> <td>로비·복도·계단</td> <td>(a + b + c) × 30~4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방청객 수 = 인구 수 × 0.000015 + 50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			구분	실명	면적기준	비고	의원실	의장실	99m ²		부의장실	56.16m ²		위원장실	38.88m ²	위원회 수: 4개	회의실	본회의장	의원 수 × 5 + 방청객 수 * × 1.5m ² 이상		회의실	의원 수 × 3.3m ²	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	위원회실	의원 수 × 8.2m ²	위원회 수: 4개	부속공간	사무국장실	38.88 ~ 64.0m ²		사무실	직원 수 × 7.2m ²		자료실 및 도서실	198 ~ 297m ²		대의원	대의원	의원 수 × 2.5m ²		기자	50m ²		실	운전자	운전기사 수 × 1.8m ²		회의원	의원 수 × 2m ²		계직원	계직원	직원 수 × 2m ²		방청객	방청객 수 * × 2m ²		d	당직실	2인실 기준 15m ²		화장실	44~46m ²		기타	예비실(50m ²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	연계공간	로비·복도·계단	(a + b + c) × 30~40%	
구분	실명	면적기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실	의장실	99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의장실	56.16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원장실	38.88m ²	위원회 수: 3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의실	본회의장	의원 수 × 5 + 방청객 수 * × 1.5m ²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회의실	의원 수 × 3.3m ²	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원회실	의원 수 × 8.2m ²	위원회 수: 3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속공간	사무국장실	38.88 ~ 64.0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무실	직원 수 × 7.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료실 및 도서실	198 ~ 297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의원	대의원	의원 수 × 2.5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기자	50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	운전자	운전기사 수 × 1.8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회의원	의원 수 × 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직원	계직원	직원 수 × 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방청객	방청객 수 * × 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	당직실	2인실 기준 15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화장실		44~46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예비실(50m ²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계공간	로비·복도·계단	(a + b + c) × 30~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실명	면적기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실	의장실	99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의장실	56.16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원장실	38.88m ²	위원회 수: 4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의실	본회의장	의원 수 × 5 + 방청객 수 * × 1.5m ²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회의실	의원 수 × 3.3m ²	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원회실	의원 수 × 8.2m ²	위원회 수: 4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속공간	사무국장실	38.88 ~ 64.0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무실	직원 수 × 7.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료실 및 도서실	198 ~ 297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의원	대의원	의원 수 × 2.5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기자	50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	운전자	운전기사 수 × 1.8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회의원	의원 수 × 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직원	계직원	직원 수 × 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방청객	방청객 수 * × 2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	당직실	2인실 기준 15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화장실		44~46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예비실(50m ²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계공간	로비·복도·계단	(a + b + c) × 30~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고, 다른 법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및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 정비, 대부료 감경 조항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강가연(02-3423-5233)